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27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남근 · 김우영 · 박정현
민병덕 · 박홍배 · 염태영
김 윤 · 박 정 · 임오경
오기형 · 김태선 · 박민규
남인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 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로, “요청할 수 없다”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하고,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 -----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생략)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u>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 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u> 1. · 2. (생 략)	<u>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u> <u><단서 삭제></u> 1. · 2. (현행과 같음)
--	---